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 강화 〉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35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6335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교통약자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안 제14조제1항) ..	3
2. 저상버스예외승인 제도 개선	5
※ 참고자료	10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221633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천준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1. 27.
3. 회 부 일 : 2026. 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지만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버스회사와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시설 등으로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

조).

Ⅲ. 검토의견

1.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교통약자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안 제14조제1항)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상 교통약자¹⁾의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교통약자 승하차에 관한 사항을 승객에게 안내할 것과 휠체어 탑승공간에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u>제공</u> 할 것 3. (생략) <u><신설></u> ② ~ ⑧ (생략)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제공</u> <u>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에 관한</u> <u>사항을 승객에게 안내할---</u> 3. (현행과 같음) 4. <u>휠체어 탑승공간에 적치물이나</u> <u>방해물이 없도록 할 것</u> ② ~ ⑧ (현행과 같음) 부칙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위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고,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의무에 추가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약자의 승하차에 관한 사항을 다른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휠체어 탑승공간에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게 하도록 법정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 승하차 시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휠체어 탑승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2. 저상버스예외승인 제도 개선(안 제14조제9항·제10항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²⁾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승인을 위하여 도로의 저상버스 운행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로 정비, 우회 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9항·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② ~ ⑥ (생략)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2)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6호)

현행	개정안
⑧ (생략) <신설> <신설>	⑧ (현행과 같음) ⑨ <u>교통행정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등의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⑩ <u>교통행정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등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한 경우 해당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를 대폐차³⁾하는 경우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등이 탑승하기 쉽도록

3) 대폐차(代廢車) : 차량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차체가 낮게 제작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아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으로 승인(이하 “저상버스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저상버스 의무도입 및 저상버스예외승인 제도가 현행법에 도입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임⁴⁾.

개정안은 저상버스예외승인 제도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기관이 도로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에 대해 1년 이내에 도로 정비, 우회 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저상버스예외승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참여 및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에 대한 개선의 의무화를 통하여 저상버스예외승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고,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의 신속한 개선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신설 2022.1.18., 시행 2023.1.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신설 2023. 1.3. 시행 2023.1.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3. 1. 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및 좌석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이 항 제1호 외의 운행형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⁵⁾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하게 저상버스예외승인 시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매년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현황(해당 노선 및 사유)과 예외승인 노선에 대한 개선 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교통행정기관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이미 시행 중인 시행규칙 상의 제도가 상향 입법됨으로써 교통행정기관에 부여된 의무의 규범력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과 달리 저상버스예외승인 시 의견을 수렴하는 대상에서 교통분야 전문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상버스예외승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 또한 수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저상버스예외승인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 조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행화한 자료를 말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1.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2. 제1호의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개선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항 신설과 저상버스예외승인을 받은 이후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에 동의함.

다만, 저상버스 예외노선 중 도로 경사 급변 등 위치 상 한계로 인하여 시설 정비·개선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행까지의 기간은 확정하지 않고 현장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현황(2024년)

(단위 : 개)

구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총 노선 수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	예외승인 노선 수	총 노선 수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	예외승인 노선 수	총 노선 수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	예외승인 노선 수
계	7,813	2,917	495	4,445	1,039	1,435	1,797	390	495
서울	474	347	39	0	0	0	229	87	81
부산	148	110	0	3	0	3	138	6	90
대구	191	157	0	0	0	0	0	0	0
인천	240	87	19	0	0	0	3	0	1
광주	102	40	0	0	0	0	10	0	0
대전	104	59	0	0	0	0	3	0	0
울산	111	48	0	0	0	0	69	1	30
세종	37	19	0	0	0	0	27	0	0
경기	1,751	606	48	271	97	2	822	290	162
강원	303	116	33	355	185	106	271	0	15
충청	354	168	142	391	13	216	0	0	0
전북	1,299	148	12	892	61	500	28	1	0
전남	260	73	12	1,070	100	425	18	0	6
경북	1,290	363	35	407	158	10	4	0	0
경남	619	436	3	716	401	25	70	5	5
제주	174	43	22	0	0	0	0	0	0

자료 : 국토교통부